제1369호

2013. 2. 21(목)

발행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집인 : 홍 보 전 산 과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55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13-20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1

공 고

• 제2013-175호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 8
• 제2013-20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10
• 제2013-212호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1)에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24

인사발령

• 2013.2.1 ~ 2013.2.20일자 ····· 2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개→영등포행정→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02)2670-7555 / 전송 :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194-0012-2013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3-20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었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법률 제10550호, 2011. 4. 5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함
다. 법률 제명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5번지 인곡빌딩 2층 환경과
나. 문 의 처 : 영등포구 환경과, ☏(02)2670-3462 FAX (02)2670-362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으로,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으로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을 “관계 부처 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으로 한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제5조제2항제2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구매촉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구매이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를 “생산·유통·판매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구매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구매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녹색제품 구매의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예외)”를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의 재고”를 “재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의 가격”을 “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를 “제1항의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9조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0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지원)”을 “(녹색제품 생산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유통·판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을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 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녹색제품"---------- ----------.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 -----관계 부처 장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
②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1. 녹색제품 ----------

현 행	개 정 안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2. 녹색제품 ----------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3. ----- 녹색제품 ----------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4. -- 녹색제품 ----------
5.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5. ---녹색제품 ----------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 녹색제품 ---------- 녹색제품 ---------- -----.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녹색제품 ----------.
1.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액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2. 녹색제품 구매촉진----------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구매촉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 녹색제품 ----------.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1. 구매이행계획 ----------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2. 생산·유통·판매사업자----------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구매촉진----------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4. 구매촉진----------

현 행	개 정 안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녹색제품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구청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 녹색제품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 각 호---------- 녹색제품----------.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 수한 경우	1. ---------- 녹색제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 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재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가격----------
② 구청장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 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의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녹색제품----------.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 녹색제품 ---------- 녹색제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현 행	개 정 안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녹색제품 ----------..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교육훈련) ----- 녹색제품----------.
제11조(친환경상품 생산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 및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생산지원) ---------- 녹색제품 ---------- 유통·판매----------.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녹색제품----------.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녹색제품 ----------.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녹색제품 ----------.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 녹색제품----------.

공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2013-175호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우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벤처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모집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4층)

나. 모집대상 : 12개 호실

(단위 : ㎡/원)

호실	임대면적	전용면적	입주부담금(원)		입주예정일	비 고
			보증금	임대료(1년)		
401호	40.199	32.577	3,648,050	1,606,320	2013.06.01	
402호	40.199	32.577	3,648,050	1,606,320	2013.07.01	
403호	40.199	32.577	3,648,050	1,606,320	2013.07.01	
404호	40.199	32.577	3,648,050	1,606,320	2013.07.01	
406호	40.199	32.577	3,648,050	1,606,320	2013.06.01	
407호	40.199	32.577	3,648,050	1,606,320	2013.07.01	
408호	47.949	38.858	4,351,370	1,916,040	2013.07.01	
411호	52.644	42.663	4,777,440	2,103,600	2013.06.01	
414호	52.644	42.663	4,777,440	2,103,600	2013.06.01	
418호	52.644	42.633	4,777,440	2,103,600	2013.06.01	
421호	54.484	44.154	4,944,420	2,177,160	2013.06.01	
422호	54.484	44.154	4,944,420	2,177,160	2013.06.01	

※ 입주 후 보증금 및 임대료 일괄 변경 시 잔여기간 추가 산정 부과되며 관리비는 매월 별도 부과

2. 모집일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3.02.27(수) ~ 03.18(월) 〈20일간〉
나. 신청서 교부 :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 지역경제과 방문
(고객만족OK 민원센터→민원서식→지역경제과→ 25, 34번 서식)
다. 접수장소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층〉
라. 입주심의
(1) 심의기관 :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2)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결정
(3) 심의일자 : 2014.04월중 (별도 통보)

3. 신청자격
가. 입주대상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2)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입주승인 제한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3) 휴·폐업중인 자, 단순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창업지원센터 졸업 또는 중도 퇴소자(타 기관 포함)

4. 입주업체 우대, 혜택
가. 창업지원센터 입주승인 및 지원신청자에 대한 평가시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가점 부여
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시 사무기기(복사기, FAX 등), 다목적실 등 지원시설 이용과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우선 지원 등 구 시책사업시 우선 선정

5. 제출서류
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사본 10부 별도)
나. 벤처기업증명서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1부
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기타 증빙서류(각종 기술자격증 사본 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반자료
※ 제출서류는 양면 복사하여 총 10페이지 이내로 하여 제출

6. 기타 사항
가. 입주자 선정결과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게시 후 유선통보
나. 입주순위에 의거 희망 입주호실 선정후 입주계약 체결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담당 송윤영(☎ 02-2670-34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3-20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연번	안 건 명	주관부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정복지과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 소 과
3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 무 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내구성과 편이성을 강화한 위원증을 발급함으로써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사명감을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위원증 제식 및 기재사항 변경 (별표1)
- ○ 재 질 : 인쇄용지 120g/㎡ → PVC(폴리염화비닐)
- ○ 기재내용 추가 : 발급일, 임기(3년) 명시
- ○ 기재내용 변경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나. 상위 근거법령 인용조문 수정(안 제30조 및 제45조)
- ○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근거,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3.1.17~2.6, 20일간)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반영)
-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청소년기본법」 (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과 「청소년보호법」 (이하 "보호법" 이라 한다)"을 "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 "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추진·운영하는데"를 "추진하고 운영하는데"로 한다.

제2조 중 "구는 청소년활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으로, "추진하고"를 "추진하고 「청소년기본법」 (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과 「청소년보호법」 (이하 "보호법" 이라 한다) 등"으로,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2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모범청소년해외견학대상자선발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모범 청소년 해외견학 대상자 선발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년·소녀가정

제45조 중 "제44조제2항"을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 중 "적절한 홍보활동을"을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적절한 홍보활동을"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24조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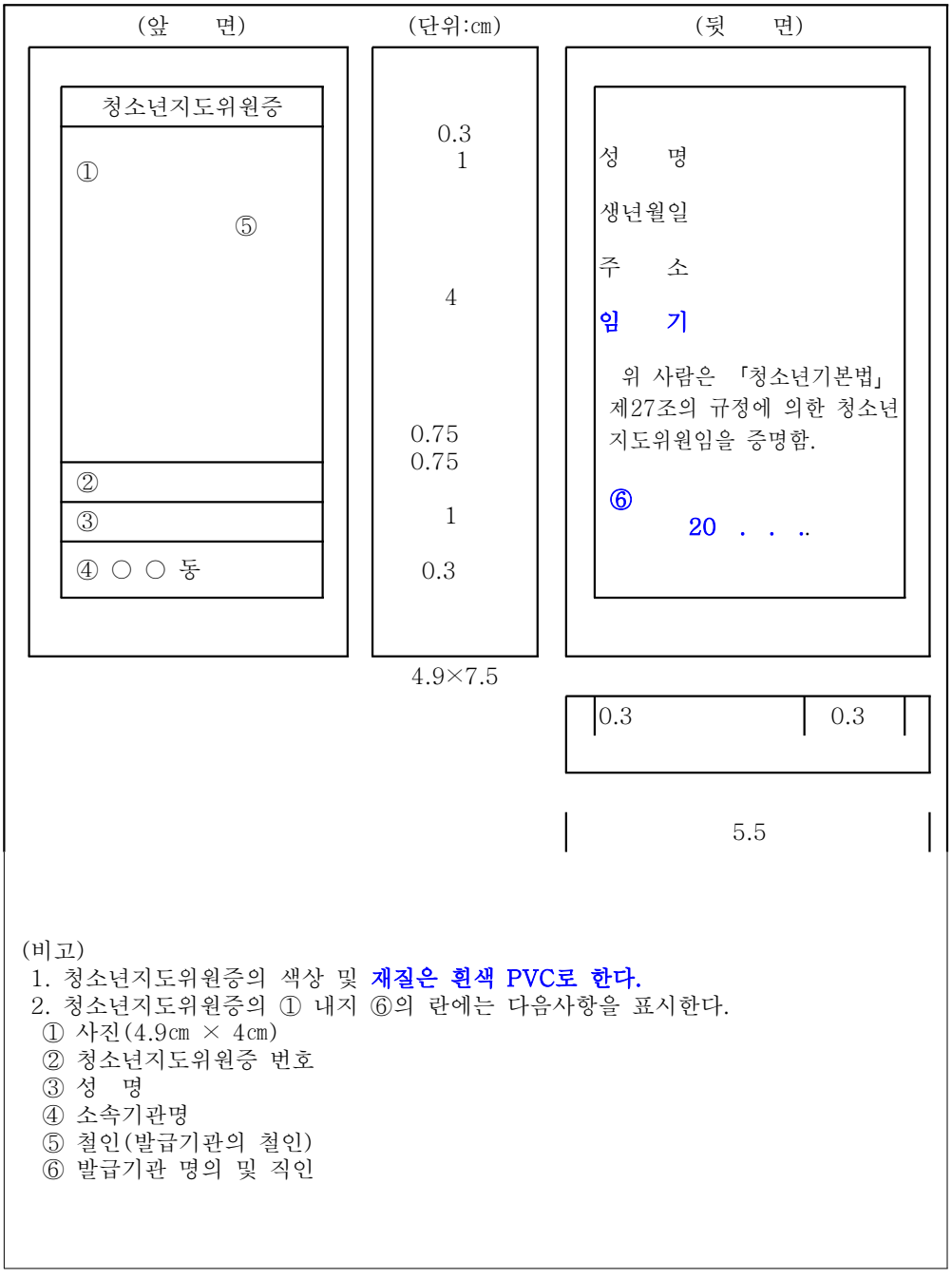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재질은 흰색 PVC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과 「청소년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등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서울특별시 영등포구----------추진하고 운영하는데 ----------.
제2조(구의 책무) 구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2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 추진하고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과 「청소년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등-------그 밖에 ----------..
제30조(수탁자 선정) ① (생 략)	제30조(수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제33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② (생 략)	제33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모범청소년해외견학대상자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모범 청소년 해외견학 대상자 선발 심의회----------
1. 소년소녀가정	1. 소년·소녀가정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5조(신고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보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신고포상금 지급) ----------제49조제2항----------.
제48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8조(홍보)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적절한 홍보활동을 ----.

현 행	개 정 안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제24조와 관련)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제24조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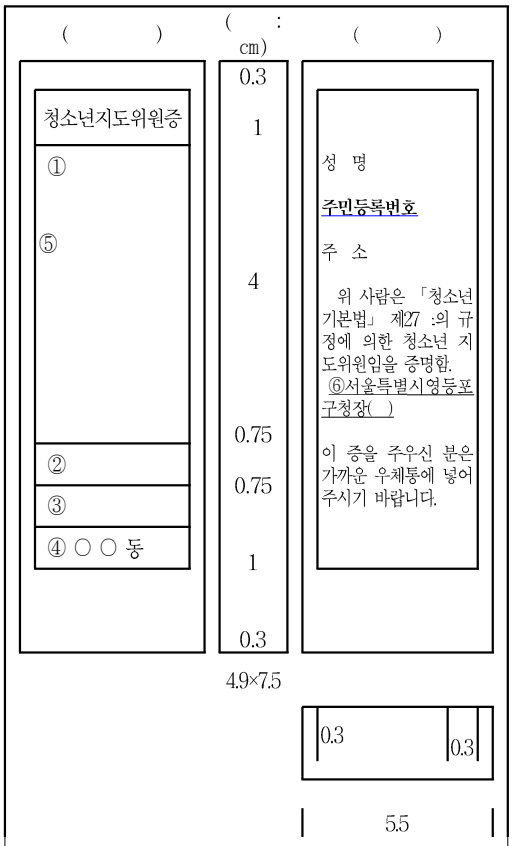

( )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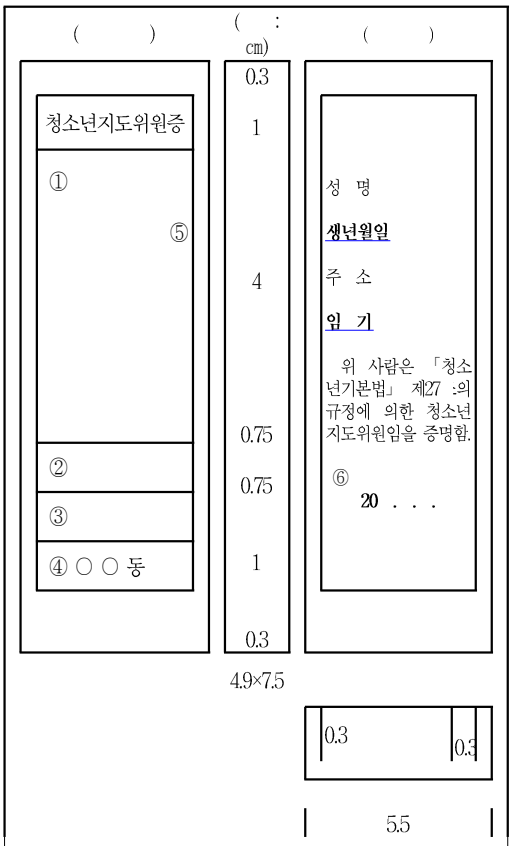

( )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재질은 흰색 PVC .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
   ⑥ 발급기관 명의 및 직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및 재활용 규정에 더불어 배출자 부담원칙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세분화 및 인상안을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낭비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조례반영(안 제2조 제3항)

○ 다량배출사업장(식품접객업)의 영업장 면적 변경

(현행) 125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제곱미터 이상

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별표2)

○ 종량제 시행방법(부피형,무게형)에 따른 수수료액을 세분화 및 상향 조정

구 분	수 수 료						
부 피 형	1L	2L	3L	5L	10L	20L	100L
	61원	122원	183원	305원	610원	1,220원	6,100원
무 게 형	kg당 76원						
음식업소,상가	kg당 114원						
다량배출사업장	별도 계약으로 정함						

다. 수수료 조정안 시행시기 : 2013년 6월 1일(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1.24~2.13, 20일간)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125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단위	수수료	수집·운반비	처리비	비 고
부피형 종량제	1L	61원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대행업체와의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 판매수수료 : 수수료(가격)에 포함
	2L	122원			
	3L	183원			
	5L	305원			
	10L	610원			
	20L	1,220원			
	100L	6,100원			
무게형 종량제	kg당	76원			※ 김장철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시기에는 20L, 100L의 부피형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일반음식업소 및 상가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kg당	114원			
다량배출사업장	별도 계약으로 정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 6. (생 략)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200제곱미터 ----------. 4. ~ 6. (현행과 같음)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구 분	수수료	비고
1.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 주택	세대당 월1,500원	
2. 위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단,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1인인 단독세대와 5인 이상인 세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세대별 월1,500원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단위	수수료	수집·운반비	처리비	비 고
부피형 종량제	1L	61원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대행업체와의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 판매수수료 : 수수료(가 격)에 포함
	2L	122원			
	3L	183원			
	5L	305원			
	10L	610원			
	20L	1,220원			
	100L	6,100원			
무게형 종량제	kg당	76원			※ 김장철 등 음식물류 폐기물

①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1인인 단독세대	세대별 월1,000원	
②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5인이상 인세대	세대별 월1,800원	
3. 음식업소	kg당 114원	

				다량배출시기에는 20L, 100L의 부피형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일반음식업소 및 상가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kg당	114원		
다량배출 사업장	별도 계약으로 정함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수요에 비해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의도 지역에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재산

【여의도 복지센터 건립(신축)】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	건물				
1	여의도동 56	공원	1,117	3,574	9,816백만원	2013.~2015.	신축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안 건 : 여의도 복지센터 건립
2. 요구부서 : 노인복지과
3. 심의요구내역

가. 취득 대상 (단위:㎡,천원)

취득재산의 표시				취득목적 (취득용도)	취득예정 가 격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	건물				
여의도동 56	공원	1,117	3,574	여의도 복지센터 건립	9,815,549	영등포구	

나. 취득사유

수요에 비해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의도 지역에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 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취득방법 : 신축

라. 취득예정가격 및 산출근거 (단위:백만원)

계	공사비 (건축, 전기, 통신등)	용역비 (설계, 감리)	기타 (시설부대비 등)	비고
9,816	8,642	1,134	40	※ 시비(2,120백만원), 국비(329백만원)

※ 산출근거(공사비) : 그린서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2011년 기준)

마. 취득시기 : 2013년도 상반기

바. 취득 후 활용방안 : 여의도 복지센터(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북카페)

사. 근 거 : 구 방침 노인복지과-4332(2012.3.5)

위 치 도

여의도공원
여의도
공작아파트
한강공원
여의도지구
IFC서울
(2012년예정)
여의도공원앞
삼부아파트
MBC
원효대교남단
금융감독원
동화홀딩스
KRX
한국거래소
대우증권본점
여의도여자
고등학교
KT
여의도지점
여의도역
한양아파트
여의도백화점
시범아파트
63시티
윤중초등학교
여의도롯데
캐슬아이비
KBS별관
여의도
자이아파트
진주아파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샛강생태공원
신길역
대상부지
올림픽대로
수협노량진
수산시장
대방역
유한양행사옥

현 장 사 진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3년도 관리계획총괄표 (변경)

(단위 : ㎡,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3,574	9,815,549				1	3,574	9,815,549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신축)	토지 건물 기타	1	3,574	9,815,549				1	3,574	9,815,549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공원	여의도동 56 (자매근린공원)	3,574	9,815,549	2013.~2015.	여의도 복지센터 건립	신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3-212호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1)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1호(2002. 6. 22)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호(2012. 1. 26)로 변경결정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1)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 또는 전자우편(mh1284@ydp.go.kr)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신문공고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23)

다. 열람내용

1)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공간시설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광장	교통광장	문래동3가 18번지 일대	-	증)375	375	-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②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 결정조서

구분	가 구 번 호		비 고
	기정	변경후	
가구	A1~A3, B1~B11, C1~C17, D1~D13, E1~E8	A1~A3, B1~B11, C1~C17, D1~D13, E1~E9	E9 추가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지 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E (문래동3가)	9	1	27-2대, 27-3대, 27-4대, 27-6대, 27-7대, 27-20대	570.8	특별계획구역 Ⅲ-1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Ⅲ-1 제외부지
		2	20-1대, 20-4대, 20-5대, 20-6대, 20-7대, 20-8대, 20-9대, 20-10대, 17도, 31-1도	1,016.9	특별계획구역 Ⅲ-1	공동개발 지정	

2) 도시관리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Ⅲ-1구역 (영일시장)	문래동3가 18번지 일대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	7,930.0	감)2,028.4	5,901.6	서고시 제251호 (2002.6.22)	-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	10 (2)	국지 도로	80 (52)	문래동3가 28-6	문래동3가 27-3	일반 도로	서고시 제22호 (2012.1.26)	( )은 특별계획 구역내 사항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소공원	문래동3가 22번지 일대	-	증)484	484	-	시설결정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신설	Ⅲ-1구역(영일시장)	E9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	5,301.6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기정(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폐율	60%	60%	변경없음
용적률	기준용적률 : 250% 허용용적률 : 400%	기준용적률 : 250% 허용용적률 : 400%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의 2배이하
높 이	최고높이 80m 이하	최고높이 100m 이하	증) 20m
건축한계선	대상지 북,남,서측에 2m 지정	대상지 북,남,서측에 2m 지정	변경없음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중 청과물 관련시설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중 청과물 관련시설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변경없음

3)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인사발령

전임계약직공무원 계약해지(계약만료)

<발령번호 제18호>

일련번호	성 명	제청			현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유 준 선 (63.10.10)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계약만료)함. (계약기간: 2010.02.01~2013.01.31)			청소과		전임계약직 "마"급 (운전)
2	이 승 철 (67.01.31)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계약만료)함. (계약기간: 2010.02.01~2013.01.31)			청소과		전임계약직 "마"급 (운전)
3	조 주 현 (70.03.16)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계약만료)함. (계약기간: 2010.02.01~2013.01.31)			청소과		전임계약직 "마"급 (운전)
4	김 호 영 (71.08.08)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계약만료)함. (계약기간: 2010.02.01~2013.01.31)			청소과		전임계약직 "마"급 (운전)
5	진 덕 현 (74.04.25)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계약만료)함. (계약기간: 2010.02.01~2013.01.31)			청소과		전임계약직 "마"급 (운전)
6	김 형 규 (75.01.27)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계약만료)함. (계약기간: 2010.02.01~2013.01.31)			청소과		전임계약직 "마"급 (운전)
7	한 만 일 (78.01.07)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계약만료)함. (계약기간: 2010.02.01~2013.01.31)			청소과		전임계약직 "마"급 (운전)
8	전 지 만 (79.08.20)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계약만료)함. (계약기간: 2010.02.01~2013.01.31)			청소과		전임계약직 "마"급 (운전)

(발령연월일 : 2013년 2월 1일자)

전임계약직공무원 신규 인사 발령

<발령번호 제19호>

일련번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직	
			소 속	직 급
1	유 준 선 (63.10.10)	전임계약직공무원(운전) "마"급에 임함 청소과 근무를 명함 (계약기간 : 2013.02.01~2015.01.31)	<신	규>
2	이 승 철 (67.01.31)	전임계약직공무원(운전) "마"급에 임함 청소과 근무를 명함 (계약기간 : 2013.02.01~2015.01.31)	<신	규>

3	신 왜 범 (68.12.02)	전임계약직공무원(운전) “마”급에 임함 청소과 근무를 명함 (계약기간 : 2013.02.01~2015.01.31)	<신	규>
4	윤 종 민 (69.07.07)	전임계약직공무원(운전) “마”급에 임함 청소과 근무를 명함 (계약기간 : 2013.02.01~2015.01.31)	<신	규>
5	조 주 현 (70.03.16)	전임계약직공무원(운전) “마”급에 임함 청소과 근무를 명함 (계약기간 : 2013.02.01~2015.01.31)	<신	규>
6	김 호 영 (71.08.08)	전임계약직공무원(운전) “마”급에 임함 청소과 근무를 명함 (계약기간 : 2013.02.01~2015.01.31)	<신	규>
7	진 덕 현 (74.04.25)	전임계약직공무원(운전) “마”급에 임함 청소과 근무를 명함 (계약기간 : 2013.02.01~2015.01.31)	<신	규>
8	김 종 현 (74.07.09)	전임계약직공무원(운전) “마”급에 임함 청소과 근무를 명함 (계약기간 : 2013.02.01~2015.01.31)	<신	규>
9	김 형 규 (75.01.27)	전임계약직공무원(운전) “마”급에 임함 청소과 근무를 명함 (계약기간 : 2013.02.01~2015.01.31)	<신	규>
10	한 만 일 (78.01.07)	전임계약직공무원(운전) “마”급에 임함 청소과 근무를 명함 (계약기간 : 2013.02.01~2015.01.31)	<신	규>

(발령연월일 : 2013년 2월 1일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신규 인사발령

<발령번호 제20호>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발 령 사 항	현 직	
			소 속	직 급
1	김 진 만 (76.03.17)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마”급에 임함 청소과 근무를 명함 (계약기간 : 2013.02.01부터 2014.01.31까지)	<신	규>

(발령연월일 : 2013년 2월 1일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계약기간 연장 발령

<발령번호 제21호>

일련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이 선 형 (62.02.17)	시간제계약직 “마”급에 임함 청소과 근무를 명함 (연장계약기간 : 2013.02.01~2014.01.31)			청소과		시간제계약직 “마”급

(발령연월일 : 2013년 2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제23호>

일련번호	성 명	제청			현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박 수 인 (78.12.19)	행정국 근무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육아)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3.02.02부터 2014.01.31까지)			행정국		지방행정 서기보

(발령연월일 : 2013년 2월 2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제24호>

일련번호	성 명	제청			현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박 은 진 (80.03.01)	복직을 명함 행정국 근무를 명함			행정국		지방세무 서기

(발령연월일 : 2013년 2월 4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제25호>

일련번호	성 명	제청			현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김 소 영 (75.12.24)	복직을 명함 푸른도시과 근무를 명함			행정국		지방녹지 서기
2	김 유 미 (80.07.15)	행정국 근무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육아)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3.02.07부터 2013.05.31까지)			행정국		지방행정 서기

(발령연월일 : 2013년 2월 7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제26호>

일련번호	성 명	제청			현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이 규 상 (71.02.20)	행정국 근무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유학)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3.02.12부터 2014.02.11까지)			건설관리과		지방행정 주사보
2	신 윤 희 (79.11.26)	행정국 근무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육아)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3.02.12부터 2013.04.07까지)			가정복지과		지방행정 서기

(발령연월일 : 2013년 2월 12일자)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제27호>

일련번호	성 명	제청			현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하 은 영 (74.05.27)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육아)에 따라 휴직을 명함(연장) (2013.02.14부터 2014.02.13까지)			행정국		지방약무주사보
2	우 미 순 (67.11.20)	행정국 근무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간병)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3.02.14부터 2014.02.13까지)			사회복지과		기능7급 지방사무 필기장

(발령연월일 : 2013년 2월 14일자)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제28호>

일련번호	성 명	제청			현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유 희 원 (79.07.24)	복직을 명함 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육아)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3.02.16부터 2016.02.15까지)			행정국		지방약무주사보

(발령연월일 : 2013년 2월 16일자)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제29호>

일련번호	성 명	제청			현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강 선 임 (82.01.30)	행정국 근무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육아)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3.02.17부터 2015.02.16까지)			대림제2동		지방행정서기

(발령연월일 : 2013년 2월 17일자)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제30호>

일련번호	성 명	제청			현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이 윤 정 (78.09.17)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육아)에 따라 휴직을 명함(연장) (2013.02.20부터 2013.12.31까지)			행정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발령연월일 : 2013년 2월 20일자)